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 밑에 설치한 디지털 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9월 30일에서 2023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2명(5급2)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4명(5급1, 7급3)을 종전의 직급(6급1, 9급3)으로 환원하고 인력 5명(7급5)를 신규로 직급상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 이전(서귀포시→제주시)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위치란 중 “서귀포시”를 “제주시”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44”를 “143”으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15”를 “116”으로 하며, 농업연구사 17 다음에 “사무운영주사보 2”를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6”을 “24”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9월 30일”을 “2023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1년 9월 30일”을 “2023년 9월 30일”로, “2021년 10월 1일”을 “2023년 10월 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1년 9월 30일”을 “2023년 9월 30일”로, “2021년 10월 1일”을 “2023년 10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5명(농업주사보 3명, 사무운영주사보 2명)은 2024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00월 0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농업서기보 3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1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의 정원 중 1명은 2021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9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으로 본다.</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의 농업주사보 3명은 2021년 7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7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농업서기보 3명으로 본다.</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농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삭 제></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삭 제></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
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에 따
른 농업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
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농업
주사 1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2호 농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
23년 9월 30일-----.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20
23년 9월 30일-----
2023년 10월 1일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u>144</u>	<u>143</u>	-1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u>115</u>	<u>116</u>	+1
·	·	·	
·	·	·	
<u>사무운영주사보</u>	<u><신 설></u>	<u>2</u>	+2
·	·	·	
사무운영서기보	<u>26</u>	<u>24</u>	-2